

2014년 道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조치사항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조치결과	완결여부
1-1	인사업무 처리부적정	징계	○ 2015년 제4회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및 신분상 조치 대상자 처분 완료(2015.5.7) - 정직 2월, 감봉 2월	완 결
1-2	인사업무 처리부적정	주의 통보	○ 공사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“직무분석 및 직급체계 개편” 용역 시행 (2015.06.16~08.04) ○ 용역 결과에 따른 인사규정 및 동시행내규 개정절차 추진(2015. 8월) ○ 규정 개정 완료(2015. 9월)	추진중
2	조직·인사 관련 규정 및 내규 불합리	개선	○ 공사 전반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위한 “직무분석 및 직급체계 개편” 용역 시행 (2015.06.16~08.04) ○ 용역 결과에 따른 인사규정 및 동시행내규 개정절차 추진(2015. 8월) ○ 규정 개정 완료(2015. 9월)	추진중
3	자체감사인력 운 용 불합리	권고	○ 감사팀내 순수 감사인력인 Adviser(전문위원) 7명 운영(2015.1.23)	완 결
4	자 체 감 사 결 과 처 리 및 사후관리 부적정	시정	○ 제스피영업점장 전보발령(2015.1.23.) ○ 관련자 2명 주의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
일련 번호	제 목	처분 요구	조치 결과	완결 여부
5-1	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 생산 및 도외반출 대리점 관리 부당처리	징계	○「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」 제37조에 따라 감사결과 재심의 결정(2015.6.29.)에 따른 징계처분 완료 (15.08.06)	완 결
5-2	도내 삼다수 생산관리 및 유통대리점 관리 등 업무 부적정	주의 통보	[통보] ○ “제주삼다수” 도내 유통혁신 방안 연구 용역 완료(2015.5.27.) ○ 용역 결과를 토대로 유통구조 개선 방안 이사회 의결 완료(2015.7.28) - 공사 직영 체제로 개편	완 결
			[주의] ① 도내 판매용 허가량 관리 관련 - 연간/월간 지하수의 매매 및 도외 반출 허가(승인)를 받아 제품 생산·판매 업무 진행 중 ② 도내 유통대리점 관리업무 직무연찬 실시하였고 향후 업무에 만전을 기함. ③ 관련자 2명 훈계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조치결과	완결여부
6	제주위터 신규브랜드 '한라수' 사업 추진 부적정	주의 통보	[통보] ○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하여 사업 성패 요인을 재점검한 결과 단순히 디자인 차별화만으로는 '동일취수원 2브랜드'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고, 생산 효율등의 문제, 기존 삼다수 브랜드의 프리미엄 이미지 상쇄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○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 부의하였고, 이사회 회의 결과 한라수 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됨	완 결
			[주의] ①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준비하고 프로세스에 의한 업무 추진 ② 관련자 3명 훈계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7	한라수 국내 판매 및 제주16 미국 판매 업체 선정 협약체결 부적정	주의	○ 한라수 시범판매 및 제주16 미국 판매 등 위탁 판매 협약 결과, 유통능력 등 종합적 검토가 미흡하여 판매 부진의 결과가 발생함에 따라, 모든 판매협약을 종료 ○ 향후 위탁판매 시범사업 등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유통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사회 부의 등을 통하여 사전 점검을 강화하며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업무 추진 ② 관련자 4명 훈계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조치결과	완결여부
8	제주위터 병입수 신규 브랜드 개발 용역사업 회계 처리 부적정	주의	○ 학술용역을 추진할 때에는 원가계산서, 과업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직무연찬 실시 ○ 향후 공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회계 업무에 만전을 기함 ② 관련자 4명 주의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9	감귤농축액 미수금 이자 처리 부적정	주의 통보 (507,018)	[통보] ○ 현재 공사 자문변호사 공식의견 요청중 (2건 접수완료, 2건 접수중) ○ 변호사의 의견서 접수 시 내부결재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 수립 예정	추진중
			[주의] ○ 관련자 1명 훈계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10	제주삼다수 육지부 운송용역 변경업무 및 사후조치 부적정	주의 통보	[통보] ○ 공사 법률고문 변호사 자문(4.27. ~ 4.28.) ○ 손해액 보전방안 검토 후 조치계획 보고(8월중)	추진중
			[주의] ○ 관련자 1명 훈계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
일련 번호	제 목	처분 요구	조치결과	완결여부
11	삼다수 제품 불량률 저감 관리 및 생산설비 하자 보수 이행 소홀	시정 통보	[통보] ○ 각 라인 설비별 불량감소에 따라 CIP를 이용한 주기적인 설비 경정비 ○ 월별 불량률 분석에 따른 월간 정비를 주기적 실시	완 결
			[시정] ○ 하자이행계획서 일정에 맞춰 12항목 하자중 12건 완료	완 결
12	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부적정	개선	○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기준 개정(2015.7.22) ○ 담당직원 업무 연찬 실시 및 관리 강화	완 결
13	기부금지원지침 등 마련 소홀	통보	○ 기부금지원 지침 제정(4월) ○ CSR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연간 지원계획 수립 및 결정(4월) ○ 기부금지원 지침 개정(6월)	완 결
14	광고선전비 지원업무 부적정	주의	① 도내외 광고협찬 지원기준 수립하여 지역사회단체 언론사 광고협찬 기준 마련 (2015.5.14) ② 관련자 3명 훈계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조치 결과	완결여부
15	사내근로복지기 금 운영 부적정	시정 통보 (20,965)	[통보] ○ 생활안정자금(5,337천원) 상환 완료(2015.6.15)	완 결
			[시정] ○ 주택임차사유 소멸직원 중 1명은 2015년 1월 대부금(4,106천원) 상환 완료(2015.2.20) ○ 주택임차사유 소멸직원 중 1명은 10,522천원 상환 완료(2015.5.20)	완 결
16	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	주의 통보	○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정 (8월) 1. 사용 제한업종 명시 2. 모니터링 근거 마련 [2008년 제정 법인카드 사용기준 폐지]	완 결
17	탐라영재관 시설물관리 용역 추진 소홀	시정 (14,694)	① 2013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정산액 14,694천원을 포함하여, 2014년 12월 정산액을 합한 건강보험·연금보험 정산액 15,623천원 회수 완료 ② 시설물관리용역 업체에 대해 인력변동 사안에 대해 철저한 보고를 지시 하였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고 있으며, 유사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 실시 ③ 관련자 1명 주의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18	제주삼다수공장 증축 전기공사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정산 소홀	시정 (5,570)	○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,570천원 상당을 2015.6.30.기한으로 회수 통보 ○ 산업안전관리비 회수의 기한 연장요청 - (주)성림전력 대표 김만철(2015.7.14) ○ 산업안전관리비 회수의 기한 연장 검토 보고 개발사업팀-741 - 2015년 6월 30일 → 변경 : 8월 20일	추진중

일련 번호	제목	처분 요구	조치결과	완결여부
19	제주용암해수산업단지 조경수 관리 부적정	시정	○ 홍단풍 3주, 담팔수 5주, 후박나무 5주, 자귀나무 2주, 해송 2주 보식 ○ 치자나무 전량 고사하여 생육이 원활한 다정큼나무로 교체 ○ 낙상홍 상태 양호 ② 관련자 1명 주의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20	제주삼다수 공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부적정	주의	① 철거한 차선규제봉은 신규공사 및 구내 안전시설물로 활용하고 공사업무 진행시 설계검토를 면밀히 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실시 ② 관련자 2명 주의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21	프리폼 제조설비 도입업무 추진 소홀	주의	○ 관련부서 간 “유연 생산체계 구축 및 중장기 설비 도입 검토 TF팀”을 구성(2015.4월) 및 시행 ○ 향후 중대 사업 추진 시 TF팀 운영을 통해 신중히 검토·결정하여 추진	완 결
22	탐라영재관 입주학생 모집·선발 부적정	주의	○ 건강보험료 납부서에 표기된 연말정산 보험료 환급분 평가 기준에 대하여 제주도 평화협력과와 협의 후 명확한 기준설정 예정(9월중)	추진중
23	주택임대 사업 입주자 자격확인 업무처리 소홀	시정	① 금천빌라 203호 이익방 입주자 자격조회 결과 확인 후 퇴거 조치(2015.3.12) ② 관련자 2명 주의처분 완료(2015.5.4)	완 결
24	기부금 예산편성 및 손금불산입 부적정	주의	○ 「기부금 예산편성 및 손금불산입 부적정」 건과 관련하여, “법인세법” 제24조 규정에 대한 직무연찬 실시함 ○ 세무회계에서 손금불산입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회계 처리에 만전을 기함	완 결